

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- 가. 2025년 자체종합감사 처분요구(감사실-4716, 2025. 11. 10.) 반영(규정개정)
- 나.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금품관련 비위행위자 징계기준 적용 명확화 도모(제10조)

- 1)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형법」에서 정한 금품 및 뇌물과 관련한 ‘요구·약속’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청렴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

나.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반영(제22조의2 및 안 제24조)

- 1)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 개정사항(2026. 3. 4.)에 근거하여 생일 휴가 제도를 공사에 도입함으로써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의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2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5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제도 도입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남성의 적극적인 출산·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3. 사전절차

- 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4호
- 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- 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4. 15. 원안가결
마. 市 승인 : 2026. 4. 20. 원안승인
경영관리처-5094(2026. 4. 22.)호

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5월 1일

규정 제731호

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청렴의 의무) 임·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남성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생일휴가: 임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휴가에 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제1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생일이었던 임직원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규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생일휴가를 사용해야 한다.
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2025년 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결과에 따라 2026년 신규 입사자부터 대우수당을 축소(6% → 3%)하여 총인건비의 인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6년 신규 입사자부터 대우수당을 기본급의 3%로 축소(별표 7)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4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2호
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4. 15. 원안가결

마. 市 승인 : 2026. 4. 20. 원안승인
경영관리처-5094(2026. 4. 22.)호
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운 기

2026년 5월 1일

규정 제732호
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우수당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7]

현행

수당 지급 기준표

구 분	지급률 또는 지급금액		지급대상
자격기술 수 당	기술사, 건축사,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	월 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자격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·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술사에 준하는 금액 지급(공사 업무와 관련된 학위에 한함) (기술직에 한하여 2급 이상 월 25,000원, 3급 이하 월15,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) (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)
	기능장, 기사,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	월 50,000원	
	산업기사	월 30,000원	
	운전직	월 40,000원	
초과근무 수 당	통상임금×1.5/209×시간		직원 (직책수행비 지급대상 제외)
연차수당	통상임금×1/209×8시간×일수		직원
특정업무 수행경비	월 80,000원		예산·결산·계약·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안전보건관리업무·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(3급 이하)
대우수당	기본급의 6%		직급대우로 임용된 직원
업무대행 수 당	월 20만원 × 1/업무대행 지정 인원수		병가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
	월 20만원 × 실제 주당 근무 시간/40시간 × 1/업무대행 지정 인원수		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직원

개정안

수당 지급 기준표

구 분	지급률 또는 지급금액		지급대상
자격기술수당	기술사, 건축사,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	월 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자격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술사에 준하는 금액 지급(공사 업무와 관련된 학위에 한함) (기술직에 한하여 2급 이상 월 25,000원, 3급 이하 월15,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) (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)
	기능장, 기사,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, 주거복지사	월 50,000원	
	산업기사	월 30,000원	
	운전직	월 40,000원	
초과근무수당	통상임금×1.5/209×시간		직원 (직책수행비 지급대상 제외)
연차수당	통상임금×1/209×8시간×일수		직원
특정업무수행경비	월 80,000원		예산·결산·계약·감사·노사·보상업무·안전보건관리업무·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(3급 이하)
대우수당	기본급의 3%		직급대우로 임용된 직원
업무대행수당	월 20만원 × 1/업무대행 지정 인원수		병가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
	월 20만원 × 실제 주당 근무 시간/40시간 × 1/업무대행 지정 인원수		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직원